거류면에 대한
군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고 성 군

[기획감사실]

거류면에 대한
군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6. 5. 17(화) ~ 5. 19(목), (3일간)

□ 감사대상 : 거류면

□ 감사인원 : 기획감사실장 외 5명

□ 감사범위 : 2014년 6월 ~ 2016년 감사일 현재 면정업무 전반

□ 주요 감사내용

○ 각종 주요시책, 지시사항 이행여부

○ 예산과 회계처리 및 물품관리 실태

○ 각종 세수 징수 실태

○ 각종 공사 추진 적정여부

○ 각종 민원처리의 관련법규 및 절차 이행여부

○ 농지관리 등 산업경제행정 전반

○ 민방위, 주민등록, 인감 등 기초 행정분야 전반

Ⅱ. 감사성과

□ 행정상·재정상 조치

구 분	행 정 상 (건)				재 정 상 (건,원)				
	계	시정	주의	현지조치	계		회수	추징	기타
처분요구	16	6	9	1	건수	5	5	0	0
					금액	2,561,920	2,561,920	0	0

□ 신분상 조치 : 주의 5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목록

일련번호	건 명	요구내용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구분	금액(원)		
1	도급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2	일상감사 미실시	주의				
3	청렴계약서 징구 및 확인 소홀	주의				
4	용산마을 용배수로정비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800,000		
5	구현소하천 수해복구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시정	회수	380,000		
6	마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설계서 작성 부적정	시정	회수	895,000		
7	봉림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정산 소홀	시정	회수	467,000		
8	화당2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설계서 작성 부적정	주의				
9	음주운전 근절대책 미수립	현지조치				
10	재택 당직근무 관리소홀	주의				
11	농지원부 관리업무 소홀	주의				
12	농지자격취득증명발급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소홀	주의				
13	2014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농지확인 업무 소홀	시정	회수	19,920		
14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소홀	시정				
15	세외수입(과태료) 부과관리 부적정	주의				
16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미이행	주의				

합 계						
	계	16	계	2,561,920		
	시정	6	회수	2,561,920		
	주의	9	추징	0		
	현지조치	1	기타	0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거류면	2014	주의	-	-	문책자구분 조서에 따름

제 목 : 도급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 사업현황

사 업 명	공사예정금액		설계서상 주공종	계약일자	견적서 제출업체		비고
	도급	관급			상호 (대표자)	업종	
상원마을 상수도관 교체공사	19,380	5,620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2014.12.29.	㈜++건설 (***)	철근·콘크리크공사업 석공사업	
월치마을 간이상수도관 교체공사	21,621	3,379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2014.12.29.	+++건설㈜ (***)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거류면 복지회관 입간판설치공사	20,000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2014.12.17.	㈜+++++ (***)	전문건설업 면허 없음	

【내 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전문공사의 경우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라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고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별표 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르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는 1.토목공사업 ~ 5.조경공사업까지 5개 건설업종이 있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는 실내건축공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까지 25개 건설업종이 있으며,

❍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울 하는 업종이며,

❍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을 시공하는 업종을 말하며,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누어지며 상수도설비공사는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이며,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을 시공하는 업체를 말하며.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인 창호공사와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금속구조물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임.

❍ 그런데도, 거류면에서는「상원마을 상수도관 교체공사」 및 「월치마을 간이상수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면서 거류면-4373(2014.12.26.)호 및 거류면-4374(2014.12.26.)에 의거 설계내역서상 주공종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설계하였음에도 상기표와 같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거류면-2681(2014.11.13.)호에 따라 거류면복지회관 입간판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내역서상 주공종을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으로 설계를 하였음에도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기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감 사 담 당 자			
NO. 2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거류면	2015	주의			문책자구분 조서에 따름

제 목 : 일상감사 미실시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 사업현황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지출금액)			발주 일자	비고
	면	리		계	도급액	관급액		
숭의원마을 안길정비공사	거류	감서	-아스콘포장 A=2,313㎡ -배수공 L=70.0m	50,000	21,709	28,291	2015. 3.3.	
당동마을 배수로정비공사	거류	당동	-포장공 L=128.0m -배수공 L=212.0m	40,000	21,960	18,040	2015 3.12.	
하원마을 안길정비공사	거류	신용	-아스콘포장 A=1,824㎡ -마을안길포장 A=69.3㎡ -가드레일 설치공 30경간	40,000	20,010	19,990	2016. 2.26.	

【내 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제1항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일상감사) 제2항에 따르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고성군 일상감사 규정」((일부개정) 2012.10.15 훈령 제388호)제1조에 따르면 일상감사의 목적은 주요업무 처리에 있어 결재권자의 의사결정시 객관적 의견을 제시하므로서 행정착오 또는 예산낭비 등의 예방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같은 규정 별표1에 따라 읍, 면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이 4천만원 이상과, 변경 총액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한도액 이상 공사가 일상감사의 대상임.

❍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일상감사 시기는 군수, 부군수의 결재사항은 주무과장 결재 후에 실시하고,

❍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업무주관부서의 일상감사 요청에 따라 일상감사는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고, 각 실·과소장 책임아래 반드시 일상감사를 기획감사실에 요청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에서는 결재시 감사의견을 미리 보고한 후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그럼에도, 거류면에서는 상기 표와 같이 추정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숭의원마을 안길정비공사와 당동마을안길 배수로정비공사, 하원마을 안길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행정착오와 예산절감을 위한 의무규정이자 강행규정이라 할 수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령 및 우리군 일상감사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감 사 담 당 자			
NO. 3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거류면	2016	주의	-	-	-

제 목 : 청렴계약서 징구 및 확인 소홀

1. 위법·부당내용

❍ 청렴계약서 징구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 사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비고
1	화당지구 농로포장공사	16,282	2016. 2. 24.	
2	덕촌세천 유지관리사업	18,800	2016. 3. 4.	
3	화당2소하천 유지관리사업	20,586	2016. 2. 29.	
4	마동소하천개보수사업	18,799	2016. 2. 24.	
5	용동마을 안길 배수로정비공사	15,420	2016. 2. 23.	
6	정촌지구 농로포장공사	15,541	2016. 2. 29.	
7	화원마을 안길정비공사	18,800	2016. 3. 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 제1항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6조의 2의 제2항 제1호 청렴서약서에는 입찰 및 계약, 계약 진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증여, 금품, 향응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호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거류면사무소 계약담당자는 화당지구 농로포장공사 외 6건에 대하여 청렴서약서를 받으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대한 사항이 누락된 청렴서약서를 받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등 청렴계약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4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시설주사보	성 명	&&&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거류면	2015	시정	회수	800,000	-

제 목 : 용산마을 용배수로정비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 사업현황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자
			계	도급액	관급액		
용산마을용배수로정비공사	거류면 용산리	○배수공L=105m	49,280	42,310	6,970	2015.3.23 ~ 2015.5.14	㈜**건설 대표 +++

【내 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 제5조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 ·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제55조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정산대상 경비의 집행이 관련 규정 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한후 당해공사의 시공내용이 설계도서 및 계약사항과 상이하거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거류면에서는 2015.3.18. ㈜++건설 대표 ***과 37,890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용산마을 용배수로정비공사」의 경우,

- 시공사에서 2015.3.23일 제출한 착공신고서중 산출내역서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 1,300천원이 계상되어 있어「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에 의거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을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준공전 확인하여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 내 이동차량 등의 통제 및 안내를 위한 신호수 인건비 800천원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2015.5.19일 준공처리하여 안전관리비 800천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과다 집행한 사업비 800,000원을 회수조치 바라며,

▶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시설주사보	성 명	&&&

NO. 5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거류면	2014	시정	회수	380,000	-

제 목 : 구현소하천 수해복구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 사업현황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자
			계	도급액	관급액		
구현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거류면 송산리	○석축공A=455㎡	50,942	50,942	0	2014.11.1. ~ 2014.12.24	00건설㈜ 대표 ***

【내 용】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용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 제5조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 ·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제55조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정산대상 경비들의 집행이 관련 규정 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당해공사의 시공내용이 설계도서 및 계약사항과 상이하거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거류면에서는 2014.11.4. ++건설㈜ 대표 ***와 50,942천원에 계약을 체결한「구현소하천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 시공사에서 2014.11.10 제출한 착공신고서중 산출내역서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보전비 380천원이 계상되어 있어「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거류면에서는 사용 실적이 없는 환경보전비 380천원을 정산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없이 2014.12.26. 준공처리 후 계약금액 50,942천원을 집행하여 380천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과다 집행한 사업비 380,000원을 회수조치 하고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6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시설주사보	성 명	&&&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거류면	2014	시정	회수	895,000	-

제 목 : 마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설계서 작성 부적정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 사업현황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자
			계	도급액	관급액		
마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거류면 신용리	○포장A=178㎡	25,000	19,880	5,120	2014.12..29 ~ 2015.1.23	㈜++건설 대표 ***

【내 용】

○ 설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은 관련 규정에 의거 설계도서대로 시공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선정과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 제5조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 ·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제55조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정산대상 경비들의 집행이 관련 규정 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당해공사의 시공내용이 설계도서 및 계약사항과 상이하거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거류면에서는 2014.12.29. ㈜++건설 대표 ***와 17,960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마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의 경우,

- 설계서를 작성하면서 석축쌓기를 1:10.3의 기울기로 시공할 경우에는 수직 면적에 환산계수 1.04를 적용하여 A=116㎡으로 산출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석축쌓기 수량산출을 하면서 환산계수를 1.04가 아닌 1.12를 적용하여 A=125㎡으로 잘못 산출하여 895천원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에 의거 설계서를 사전 숙직 하여 설계상의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한 경우에는 준공전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1.23 시공사의 준공검사원 제출시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2015.2.3. 준공검사 후 계약금액 19,880을 지급하여 895천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과다 집행한 사업비 895,000원을 회수조치하고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감 사 담 당 자			
NO. 7		직 급	지방시설주사보	성 명	&&&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거류면	2016	시정	회수	467,000	-

제 목 : 봉림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 정산 소홀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 사업현황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자
			계	도급액	관급액		
봉림지구 용배수로정비공사	거류면 감서리	○배수공L=502m	48,085	18,851	29,234	2016.3.2. ~ 2016.3.29	㈜++지질 대표 ***

【내 용】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용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 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 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 제5조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 ·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

야 하며 제55조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정산대상 경비들의 집행이 관련 규정 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공사의 시공내용이 설계도서 및 계약사항과 상이하거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거류면에서는 2016.3.2. ㈜ ++지질 대표 ***과 18,851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봉림지구 용배수로정비공사」의 경우,

- 시공사에서 2016.3.2에 제출한 착공신고서의 산출내역서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보전비 123천원이 계상되어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거류면에서는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없이 2016.4.4 준공처리 하였으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 344천원이 계상되어 있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에 의거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을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된 경우 에는 준공전 확인하여 정산조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준공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비 123천원과 안전관리비 344천원 등 총 467천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과다 집행한 사업비 467,000원을 회수조치 하고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감 사 담 당 자			
NO. 8			직 급	지방시설주사보	성 명	&&&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거류면	2016	주의	-	-	-	

제 목 : 화당2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설계서 작성 부적정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 사업현황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자
			계	도급액	관급액		
화당2소하천 유지관리사업	거류면화당리	○하천정비L=164m	45,172	19,253	25,919	2016.3.2. ~ 2016.3.24	㈜++건설 대표 ***

【내 용】

○ 설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은 관련 규정에 의거 설계도서대로 시공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 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선정과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47호)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 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거류면에서는 2016.2.29. ㈜++건설 대표 ***과 20,589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화당2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의 경우,

- 설계서를 작성하면서 변경된 「2016년건설공사표준품셈」에는 강관동바리 적용품을 구조물 높이를 기준으로 구간별로 달리 적용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관동바리(2-5-1) “2.5m이하“ 품을 적용하여 331천원의 공사비를 계상하지 않고 개정 이전의 품셈[강관동바리(암거용2-5-1)]을 적용하여 377천원의 공사비를 계상함으로서 46천원을 과다 설계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9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거류면	2015~2016	현지조치	-	-	-

제 목 : 음주운전 근절대책 미수립

1. 위법·부당내용

○ 기획감사실-18521(2015.12.7.)호「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 통보」및 기획감사실-6125(2016.4.14.)호 「공무원 음주운전 금지 재강조에」따르면 최근 우리군 공무원의 음주 후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서별 조치사항을 통보한 바가 있음.

(부서별 조치사항)
- 전 부서장은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및 교육 실시
- 전 부서장은 각종 회식 모임 후 음주자에 대하여 자가용 차량 이용여부 확인
- 2~3차에 걸친 회식 모임 등을 자제하고 음주자는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 등 이용
- 기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부서별 자체세부계획 수립

※ 감사담당에서는 음주운전 근절대책 수립 및 교육실시 여부를 수시 확인할 예정이며 위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사법기관에 적발될 경우 '지시사항 위반'으로 부서장 연대문책

○ 그럼에도, 거류면에서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우리군 공무원 음주운전의 현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현지조치 결과

※ 거류면-5588(2016.5.17.)호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 교육" 계획 수립

2. 처분요구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0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거류면	2014~2016	주의	-	-	문책자구분 조서에 따름

제 목 : 재택 당직근무 관리소홀

1. 위법·부당내용

❍ 당직근무 위반내역

직 급	성 명	위반회수	비고
사회복지7급	***	1	
보건7급	***	2	
행정6급	***	1	
행정7급	***	3	
행정7급	***	1	
세무7급	***	1	
농업6급	***	3	
행정8급	***	1	
사회복지8급	***	2	
사회복지6급	***	2	
시설7급	***	2	
행정7급	***	1	
합 계		20	

❍ 고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택당직근무제도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무인전자경비시스템 등 보안장비 설치,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확보 등 통신연락 체계를 강구하고, 재택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거류면사무소에서는 2014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재택당직공무원은 근무 종료 18:00 부터 1시간 이상 공무원비상근무 규칙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재택당직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정위치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조기 퇴근함에도 재택당직공무원의 복무를 지도·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1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거류면	2014~2016	주의	-	-	-

제 목 : 농지원부 관리업무 소홀

1. 위법·부당내용

○ 농지원부 관리현황

연번	농가고유번호	농가주명	세대주생년월일	세대주성명	최초작성일자
1	4882043022-2-1-0075	&&&	1932년 12월 26일	&&&	1999-08-02
2	4882043022-1-1-0119	&&&	1932년 12월 26일	&&&	2016-04-18
3	4882043021-3-1-0006	%%%	1936년 02월 03일	%%%	1991-03-15
4	4882043021-1-1-0134	+++	1936년 02월 03일	%%%	2007-06-13
5	4882043026-1-1-0058	&&&	1952년 11월 26일	&&&	2012-06-21
6	4882043026-1-1-0036	++	1952년 11월 26일	&&&	1991-03-15
7	4882043022-4-1-0055	@@@	1957년 04월 03일	@@@	1991-03-15
8	2641010900-4-1-0202	+++	1957년 04월 03일	@@@	2013-04-08
9	4822034024-6-1-0003	***	1957년 04월 10일	***	2007-05-03
10	4812914400-1-1-0151	+++	1957년 04월 10일	***	2015-12-16
11	4272036023-1-1-0116	₩₩₩	1965년 04월 25일	₩₩₩	2013-06-26
12	4371025344-3-1-4609	+++	1965년 04월 25일	₩₩₩	2010-04-12

○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2항 시·군·읍·면의 장은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제3항 시·군·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는 제49조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거류면사무소 농지원부관리 담당자는 농지원부를 관리하면서 세대주 &&& 외 5명에 대하여 1세대에 농지원부가 2개씩 존재함에도 농지원부를 정리하지 않고 있어 농지원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

NO. 1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거류면	2015	주의	-	-	문책자구분 조서에 따름

제 목 : 농지자격취득증명발급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소홀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농지소재지			지목	취득면적 (㎡)	취득자 구 분	취득원인	취득목적	농지 현재상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 급 일
면	리	지번							
거류	화당	+++	답	142	주말체험	경매	주말체험	휴경	2015.3.25
	신용	+++	답	754	신규영농	매매	농업경영	"	2015.3.18
	신용	+++	답	1,180	신규영농	매매	농업경영	"	2015.3.18
	거산	+++	전	354	주말체험	증여	주말체험	" (현, 묘지)	2015.3.9.
	거산	+++	답	3,160	신규영농	증여	신규영농	휴경	2015.2.25
	은월	+++	전	604	농업인	매매	농업경영	휴경 (현, 야적장)	2015.4.2.
	화당	+++	전	1,193	농업인	경매	농업경영	휴경	2015.5.14.
	송산	+++	답	2,116	신규영농	매매	농업경영	휴경	2015.5.7
	감서	+++	전	1,633중 430	농업인	매매	농업경영	휴경 (현, 묘지)	2015.6.22

【내 용】

❍ 농업인이 농경지를 구입하고자 할때는「농지법」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지자격취득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은 현장확인을 통하여 경작 또는 휴경여부를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을 첨부하여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함.

1.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거나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할 경우나 기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발급받아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2.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는 농지의 소유자

에게는 농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5분의1)을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하여 부과됨.

❍ 또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 처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4호)에 따르면 농지법시행일(1996.1.1.)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전년 9월 1일부터 당년 8월 30일(1년간)중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90일간)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거류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휴경한 농지에 대하여 경작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상기 현황표에 있는 휴경농지에 대하여 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농지법 제11조제1항 및 제62조가 규정하는 농지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농지에서 누락되는 등 농지자격취득발급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3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거류면	2014	시정	회수	19,920	-

제 목 : 2014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농지확인 업무 소홀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 직불금 과다 지급 현황

농업인	농지소재지	신청면적 (㎡)	부적정 내용	과다 지급액
합 계				19,920원
도숙영	가려리 273-1(답)	728	일부면적 건축물(200㎡)	고정직불금 14,600원 변동직불금 5,320원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제1항에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서 제2권 농촌개발·축산·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 IV. 소득보전에 5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지급대상농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 규정에 따르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 포함)

· 고정직접지불금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 :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거류면사무소에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접수 후 면장이 신청인의 신청면적, 벼 재배면적, 신청농지·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하게 되어 있음에도 거류면 가려리 297 도숙영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19,920원을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과다 지급한 직불금 19,920원을 회수조치 하고,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4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세무주사보	성 명	김수진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거류면	2015~2016	시정	-	-	문책자구분 조서에 따름

제 목 :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소홀

1. 위법·부당내용

○ 군수지시사항
- 체납세 반으로 줄이기 총력 추진 지시(2015.11.30. 간부회의)
- 체납세 징수 철저(제로화 추진)[2016.1.25. 간부회의]

❍ 관련문서
- 재무과-11151(2015.4.23.) 2015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 통보
- 재무과-27780(2015.10.8.) 소액체납세징수 및 체납자관리카드입력철저
- 재무과-32620(2015.11.27.)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군수지시사항 통보
- 재무과-03957(2016.2.15.)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추진계획통보

❍ 상기호와 같이 체납자별 체납원인분석 및 생활실태조사, 소액, 상습 체납자 체납세 납부 독려사항 전산입력 관리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한바 있으나, 체납세(1,385명, 3,424건, 641백만원) 관리실태를 보면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체납세에 대한 담당자의 관심, 종중의 재산관리자 파악 등을 통해 징수 가능한 종중의 토지분, 건축물분 재산세 체납 26명, 48건, 2,177천원 및 소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총 체납자중 1,075명 2,114건 108백만원에 대한 체납사유분석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2014. 6월부터 현재까지 체납자별 체납독려사항의 입력관리가 377건으로 체납세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체납자중 1,075명 2,114건 108백만원에 대한 체납사유 분석자료 제출 및 체납자별 체납독려 사항을 입력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5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세무주사보	성 명	김수진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거류면	2014~2016	주의	-	-	-

제 목 : 세외수입(과태료) 부과관리 부적정

1. 위법·부당내용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18조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 내 자진납부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감경하여야 하며, 의견제출 기간 내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감경 전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 2014년 6월~현재까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7건 162,000원,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21건, 882,000원, 총28건, 1,044,000원을 부과함에 있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내 과태료 대장에 감경자료(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를 입력 관리하여야 하고 과태료 감경부과고지서를 발부 후 과태료를 징수하여야 하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과태료대장에 입력 관리하지 않고 부과대장관리에 직접 입력하여 과태료를 감경 처리하는 등 과태료 부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NO. 16			감 사 담 당 자			
			직 급	지방세무주사보	성 명	김수진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거류면	2014~2016	주의	-	-	-

제 목 :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미이행

1. 위법·부당내용

❍ 재무과-4618(2014.11.3.)호에 의거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요령 및 상속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시달.

❍ 재무과-26588(2015.9.23.)호에 의거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및 등기절차안내 시달.

❍ 상기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의무자가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 부담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2014.6.1.~현재까지 관내 사망자 128명중 재산세 및 자동차세 과세내역이 존재하는 고성군 거류면 거산리 349번지 박기상(34.04.27.)외 76명의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안내문 발송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